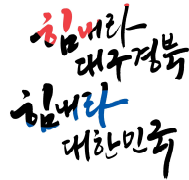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4. 8(수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자동차보험팀	담 당 자	·팀장 이재연, 사무관 조숙현, 주무관 조지예 ·☎ (044) 201-4760, 4761, 4870	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8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“최대 1,500만원”

9일부터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...10월경 시행

□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 금액(사고부담금)을 상향하는 내용의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4월 9일(목)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.

□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,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,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.

○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*된 금액이지만,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.

* ('04년) 신설 인적피해 200만 원, 물적피해 50만 원 → ('15년) 현행으로 인상

□ 지난 해 ‘운창호법’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,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,

-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,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'18년 1,000만 원에서 '19년 1,167만 원으로 16.7% 증가하여, '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,681억 원에 달했다.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.
-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,
 -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,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,000만 원,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-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“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”이라며,
 - “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,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”고 밝혔다.
-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.
-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(40일간)이고 관계부처 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 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 -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

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- 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,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/ 전화번호: 044-201-4761, 4870, 팩스: 044-201-5587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보험팀 조숙현 사무관(☎ 044-201-476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